

고려에 下嫁해 온 몽골공주들의 정치적 위치와 고려-몽골 관계: 齊國大長公主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명 미*

- I. 머리말
- II. 몽골 조정과 고려 사이에서 :
齊國大長公主와 다루가치의 관계를 통해
- III. 공주와의 통혼과 고려국왕의 정치력 :
私屬人들의 역할
- IV. 맺음말

I. 머리말

고려왕실과 몽골황실 간 통혼은 고려 元宗 15년(1274, 元 世祖 至元 11), 고려세자 王諱(뒤의 충렬왕)과 世祖 쿠빌라이의 딸 쿠틀룩케르미쉬 [忽都魯揭里迷失] 공주 간 통혼으로 시작되었다.¹⁾ 南宋 정벌과 日本 원정을 앞둔 몽골 조정의 상황, 林衍의 元宗 폐위 사건 및 삼별초의 반란을 통해 표면화한 고려 내 정국 상황 및 그와 연계된 몽골과의 불안정한 관계 등 복잡한 정세들이 맞물린 가운데, 고려왕실과 몽골황제 각각의 이해관계가 만난 지점에서 성사된 통혼이었다.²⁾ 이후 고려 충렬왕부터 공민왕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객원연구원.

1) 『高麗史』 권27, 元宗 15년 5월 丙戌.

에 이르기까지, 어린 나이로 통혼에 이르지 못한 충목왕과 충정왕을 제외한 모든 고려의 국왕들은 몽골황실의 공주를 부인으로 맞이했고, 총 7명의 몽골공주들이 고려왕비가 되었다.³⁾

고려왕실에 下嫁해 온 몽골공주들과 관련해서는 그간 비교적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양국간 통혼이 성사·유지된 정치적·외교적 배경에 대한 연구로서 각 공주들의 가문 배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충렬왕비 齊國大長公主나 충혜왕비 德寧公主와 같이 고려의 정치에서 두드러지는 역할을 했던 공주들의 정치적 위상이나 최초의 重祚를 발생시키며 고려 정국분열의 단초가 되었던 ‘趙妃무고사건’의 한 축에 있었던 충선왕비 薊國大長公主에 대한 연구 등 개별 공주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기도 했다.⁴⁾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고려-몽골 간 왕실통혼이라는 특수한 관계

- 2) 이 통혼을 비롯해서 고려왕실과 몽골황실 간 통혼이 성사·유지된 배경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김혜원, 『麗元王室通婚의 성립과 특징』, 『이대사원』 24·25합, 1989; 森平雅彦, 『駙馬高麗國王之成立-元朝における高麗王の地位についての豫備的考察』, 『東洋學報』 79-4, 1998; 『モンゴル覇權下の高麗 : 帝國秩序と王國の對応』, 名古屋大學出版會, 2013; 이명미, 『고려·원 왕실통혼의 정치적 의미』, 『한국사론』 49, 2003 등 참조.
- 3) 충렬왕비 齊國大長公主 이외의 몽골공주 출신 고려왕비들은 모두 몽골 宗王의 딸이었다. 한편 고려국왕 이외에도, 충렬왕의 長子인 王滋의 아들로 충선왕을 이어 瀋王에 봉해졌던 王暉 역시 몽골공주를 맞이했다. 또한 고려국왕 가운데에서도 충선왕은 薊國大長公主와의 통혼 이전에 공주가 아닌 몽골여성 也速眞을 비로 맞이한 바 있다(『高麗史』 권91, 宗室2, 江陽公 王滋傳 附 瀋王 王暉傳, 권89, 后妃2, 懿妃 也速眞傳).
- 4) 정용숙, 『고려시대의 후비』, 민음사, 1992; 권순형, 『원 공주 출신의 왕비의 정치 권력 연구-충렬왕비 齊國大長公主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77, 2005; 김현라, 『고려 충렬왕비 齊國大長公主의 위상과 역할』, 『지역과 역사』 23, 2008; 이정란, 『충렬왕비 齊國大長公主의 책봉과 그 의미』, 『한국인물사연구』 18, 2012; 김난옥, 『충혜왕비 德寧公主의 정치적 역할과 위상』, 『한국인물사연구』 14, 2010; 김성준, 『麗代 元公主出身王妃의 政治的位置에 對하여-특히 忠宣王妃를 중심으로-』, 『한국여성문화논총』, 이대출판부, 1958; 이정란, 『충렬왕대 薊國大長公主의 改嫁운동』, 『한국인물사연구』 9, 2008; 김현라, 『원간섭기 충선왕비 薊國大長公主의 위상 정립과 의미』, 『지역과 역사』 39, 2016 의.

의 여러 측면과 그러한 관계 속에서 등장한 몽골공주 출신 고려왕비들의 고려 내 위상 등에 대해 많은 부분이 밝혀졌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구체적 내용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몽골공주 출신 고려왕비들에 대해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문제이다.

한 가지는 몽골공주 출신 고려왕비들이 고려-몽골 관계에서 점하고 있었던 정치적 위치에 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몽골공주들을 고려 對 몽골의 대립적인 양자구도 속에서 몽골을 대리 혹은 대표하여 고려에 대한 간섭 혹은 감독을 담당한 주체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특히 최초 통혼 사례이자 몽골황제인 世祖 쿠빌라이의 딸이었던 충렬왕비 齊國大長公主에 대한 연구들에서 두드러진다. 이는 제국대장공주가 황제의 딸이라는 사실과 그가 보여준 威勢에 주목한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몽골공주와 고려국왕의 통혼이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는 만큼, 공주가 고려-몽골 관계에서 몽골을 대표하는 입장에 있었다는 이해는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그의 역할이 고려를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실제 제국대장공주가 보여준 활동사례들 가운데에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오히려 그 반대로도 해석 가능한 사례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이러한 사례들은 공주의 ‘고려왕비’로서의 정체성이 발현된 사례로 설명된다. 이러한 이해와 설명이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표면적으로 상반되는 두 가지 방향성이 갖는 관계를 구조적으로 설명하고 그러한 위에 공주의 정치적 위치를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 가지는 개별 공주들의 정치력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나아가, 몽골공주와의 개별 통혼사례들이 고려국왕들의 정치력에 미친 영향력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충렬왕을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게 하기도 했던 제국대장공주와 의혹이기는 하나 충숙왕에게 맞은 것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했던 그의 왕비 漢國長公主의 정치력 사이의 간극은 크다. 공주들 간 정치력 차이는 일차적으로는 공주들이 고려의 정치에 개입하는 양상의 차이로 드러나지만, 동시에 개별 공주와의 통혼을 통해 고려국왕들이 확보할 수 있었던 정치력의 차이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가 공주들의 가문 배경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추정이 가능하다. 주지하다시피 제국대장공주 이후 고려왕비가 된 몽골공주들은 宗王의 딸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의 인식을 넘어, 공주의 가문 배경이 구체적으로 공주의 정치력에, 나아가 고려국왕의 정치력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그간 충분히 검토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몽골제국이 分封을 근간으로 하는 分權的 성격을 가진 정치체였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고려왕실에 下嫁해 온 몽골공주들은 물론 고려-몽골 관계라고 하는 국가 대 국가 관계에서 몽골의 대표자격을 갖지만, 동시에 몽골제국의 분권세력인 宗王의 딸로서 그 가문을 대표해서 下嫁해 온 주체이기도 하며, 또한 下嫁 이후에는 부마와 함께 또다른 분권세력을 형성하기도 했다. 따라서 고려-몽골 관계 속에서 몽골공주들의 정치적 위치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려 대 몽골이라는 표층의 국가 간 관계 아래에서 형성되고 작용하던 개별 국왕 및 개별 황제·종왕 등 사이의 관계, 즉 개인 간·가문 간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고려에 下嫁한 몽골공주들이 고려-몽골 관계에서 점하고 있었던 정치적 위치를, 몽골제국의 국가 체제라는 큰 구도 속에서 다시 조망해보고자 한다.⁵⁾

5) 본 논문에서는 이 시기 고려의 외교대상국의 국호를 주로 ‘몽골’로 지칭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1271년, 세조 쿠빌라이는 ‘大元’이라는 국호를 제정했다. 이는 몽골의 ‘漢化’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로 이해되기도 했으나, 근래에는 이 ‘大元’이라는 국호가 ‘예케 몽골 울루스(Yeke Mongol Ulus)’의 동의어로 대몽골제국 전체를 가리키는 한자식 국호일 뿐이며, 그것이 아우르는 범위에는 중국의 이른바 ‘元朝’, 즉 대칸의 직접 지배를 받는 카안 울루스 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동지역의 여러 울루스들, 이른바 4대 칸국[Khanate]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본문의 첫 번째 장인 제2장에서는 고려왕실에 下嫁해 온 몽골공주들이 고려-몽골 관계 속에서, 보다 정확히는 몽골조정과 고려 사이에서 어떠한 위치에 서 있었는지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움직임이 컸던 충렬왕비 齊國大長公主와 그 통혼 초기 고려에 주재했던 다루가치[達魯花赤]의 관계를 통해 이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다루가치가 고려에 주재한 기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고려-몽골 관계의 전시기를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몽골제국의 국가체제 아래에서 다루가치라는 존재가 가졌던 정치적 위치와 제국대장공주의 ‘공주’로서의 정치적 위치 간의 관계는 개별성보다는 보편성을 갖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고려-몽골 관계 내에서 몽골공주의 정치적 위치는 그 이후까지 시기를 확대하여 다른 공주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본문의 두 번째 장인 제3장에서는 고려-몽골 관계에서 몽골공주들의 정치력이 어떻게 발현되는지의 문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주들이 고려에 와서 생활하는 데에 1차적인 보좌역할을 했을 공주 私屬人들의 활동양상을 통해, 몽골공주와의 통혼이 고려국왕의 정치력에 작용하는 구체적 양상의 일단을 살펴보고자 한다.⁶⁾

(김호동, 『몽골제국사 연구와 『集史』』, 『경북사학』 25, 2002). 이 견해에 따르면, 元이든 몽골이든 그것이 지칭하는 국가는 동일한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굳이 ‘元’이라는 국호 대신에 몽골이라는 국호를 사용하는 이유는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이 몽골이 유목국가로서 유지하고 있던 국가체제 및 다른 정치단위와의 관계형성방식(개인 간·가문 간 관계)이라는 점과 관련된다. 물론 ‘元’이라는 국호를 사용하면서도 이러한 측면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특징적 면모들이 그들이 ‘중국의 정통왕조’임을 자처한 데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애초 가지고 있었던 유목사회의 성격으로부터 이어진 것이라는 점, 그것이 갖는 ‘非중국적’ 성격을 좀 더 부각하기 위해 일단 ‘몽골’이라는 국호를 주로 사용하고자 한다.

- 6) 고려국왕들은 몽골공주와의 통혼으로 황실의 부마가 됨으로써 그에 수반한 제도적·의례적 위상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의 왕권을 재구축할 수 있었다. 이는 몽골황실의 부마라고 하는 제도적·구조적 위상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통혼사례

II. 몽골 조정과 고려 사이에서 : 齊國大長公主와 다루가치의 관계를 통해

元宗 15년(1274), 고려세자 王諱과 世祖 쿠빌라이의 딸 쿠틀룩케르미쉬 공주가 몽골에서 통혼했다. 통혼 직후 원종이 사망하여 王諱이 국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공주 역시 같은 해 10월에 고려에 들어왔다.⁷⁾ 쿠틀룩케르미쉬 공주는 이후 齊國大長公主로 책봉받는 인물로, 그 아버지가 당대의 황제인 世祖 쿠빌라이이기도 하여 고려에 下嫁해 온 몽골공주들 가운데에서도 그 위세가 가장 강성했고, 가장 많은 정치적 활동을 보여주었다. 이에 기존의 연구들은 그러한 제국대장공주의 정치적 역할의 왕성함 혹은 그 높은 위상에 주목하고, 나아가 그가 몽골 조정의 이익을 대표하면서 고려의 정치를 감독하는 주체인 것으로 이해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이해는 충분히 타당한 측면을 갖지만, 그러한 공주의 ‘위상’ 혹은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제국대장공주가 고려에 下嫁해 온 시기에는 원종이 복위한 이후로 고려에 파견되었던 다루가치, 삼별초 난 진압 및 일본 원정 준비를 위해 주둔했던 몽골군 원수부 등 다양한 수위의 몽골세력이 고려에 들어와 있었고, 이들은 당시 부마로서의 지위를 새롭게 확보했던 충렬왕과 여러 면에서 갈등하며 상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충렬왕의 ‘부마’라는 지위 역시

에 의해 영향을 받는 측면은 적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본 논문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부분은 개별 국왕들이 각자의 통혼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었던 인적 기반 등의 ‘정치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별 통혼사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일 수 있는 내용이다. 前者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비교적 깊이있는 검토가 이루어진 것에 비해, 後者の 문제는 아직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바가 없다. 몽골공주와의 통혼이 고려국왕권에, 고려-몽골 관계에 미친 영향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前者에 더하여, 後者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7) 『高麗史』 권28, 충렬왕 즉위년 冬10월 辛酉.

공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에 이를 통해 고려-몽골 관계에서 공주의 위치에 대해 살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보다 직접적으로 공주의 정치적 위치를 파악하는데 시사점을 주는 사례로 다루가치가 관련되어 있는 다음 사례가 주목된다.

충렬왕 원년(1275) 7월, 다루가치 黑的이 몽골로 돌아갔다.⁸⁾ 전년 12월에 고려에 다루가치로 부임해 온 지⁹⁾ 7개월 만의 일이다. 충렬왕과 공주는 그의 귀국을 만류했으나, 黑的은 듣지 않고 귀국했고, 이에 공주는 黑的이 귀국하여 참소로 사단을 꾸며낼 것을 염려하여, 당시 聖節 하례를 위해 몽골로 보낸 사절단에 자신의 怯怛口, 즉 私屬人이었던 식투르[式篤兒]를 함께 보내어 그의 행위를 엿보게 했다. 黑的의 귀국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이 발생한 배경으로 史書는 黑的의 성품을 들고 있다. “그의 성품이 교활하고 거짓이 많아 믿기가 어려우며, 다루가치가 되면서 매우 거만해졌”는데, “왕이 여러 번 그를 억제하여 감히 제 뜻대로 방자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¹⁰⁾ 요컨대, 그가 거만하여 충렬왕과의 사이에 갈등이 생겨 몽골로 돌아가고자 했고, 그의 성품이 거짓이 많아 참소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공주가 식투르를 보내어 감시하게 했다는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黑的은 다루가치로 부임하기 전에도 두 가지 사안으로 몇 차례 고려에 사행을 온 적이 있었다. 한 가지는 원종 7년~9년, 일본 招諭를 위한 세 차례의 사행이며,¹¹⁾ 다른 한 가지는 왕 10년의 원종 폐위사건 당시 그를 복위시키기 위한 詔使로서의 사행이었다.¹²⁾ 이 사행들에서 그는 몇 가지 일화를 남겼는데, 이는 위에 제시된 그의 성품과 관련한 사료의 기록을 이해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일본 초유를 위한 세 차례의 사행 가운데 두 번째인 원종 8년

8) 『高麗史』 권28, 충렬왕 원년 秋7월 甲午.

9) 『高麗史』 권28, 충렬왕 즉위년 12월 甲寅.

10) 『高麗史』 권28, 충렬왕 원년 秋7월 甲午.

11) 『高麗史』 권26, 원종 7년 11월 癸丑; 8년 8월 丙辰; 9년 11월 甲子 등.

12) 『高麗史』 권26, 원종 10년 11월 壬子.

(1267)의 사행 당시, 黑的은 李藏用으로부터 일본 초유를 중지할 것을 몽골 조정에 요청해줄 것을 청하는 서신을 받았다. 일본이 몽골의 초유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정벌로 연결되어 고려에도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한 이장용이 그를 설득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일련의 과정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던 국왕 원종이 이장용의 二心을 의심하여 그를 유배 보내고자 했고, 더불어 당시 黑的 등 몽골 측 사신 일행을 접대했던 館伴 起居舍人 潘阜도 不告罪로 연루되어 유배를 가게 되었다. 이에 黑的은 이장용으로부터 받은 서신을 돌려보내는 한편, 그 서신을 元 조정에 전한다 하더라도 고려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 하며 원종을 설득하여 이장용과 반부의 유배를 막고 상황을 무마했다.¹³⁾ 이는 그간 일본 초유를 위한 사행을 함께 해오던 반부가 유배를 가게 될 경우 使命을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될 것을 우려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¹⁴⁾ 이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무리한 처사는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원종 복위를 위한 詔使로 고려에 온 黑的은 詔書를 전하고 복위가 결정된 다음날, 연회에 참석했다. 여기에서 원종은 黑的 등으로 하여금 상좌에 앉게 했는데, 黑的 등은 고려 ‘王太子’, 즉 王諶(뒤의 충렬왕)이 황제의 딸과 혼인하기로 했으니 그리할 수 없다고 사양하며 원종에게 상

13) 『高麗史』 권102, 李藏用 傳.

14) 黑的 스스로도 일본 초유라는 동일한 사안과 관련한 사행단을 계속하여 이끌었는데, 실무적인 사안과 관련한 사행에서 해당 사안과 실무적으로 관련성을 갖는 인물이 지속적으로 사행단을 이끌거나 참여하는 사례는 여타 고려-몽골 간 사행 人選에서도 확인되는 양상이다. 이는 국가 간의 사행이 정례적·의례적 사행에 한정되지 않고 실무적인 사안과 관련한 사행의 비중이 높았던 몽골에서 해당 사안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물,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使臣 人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몽골의 使臣이 갖는 특징적 면모에 대해서는 苗冬, 『元代使臣研究』, 南開大學 博士學位論文, 2010 참조. 고려-몽골 간 사행의 양상과 관련해서는 이명미, 『元宗代 고려 측 對 몽골 정례적·의례적 사행 양상과 그 배경 - 1273년(元宗 14) 고려 측 賀冊封 使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69, 2015 ; 이명미, 『고려-몽골 간 使臣들의 활동 양상과 그 배경』, 『한국중세사연구』 43, 2015 참조.

좌를 권했다. 결국 원종과 黑的이 東西로 마주보고 앉았다는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다.¹⁵⁾ 이는 세자의 청혼이 받아들여짐으로 인한 실제적인 관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權臣에 의해 폐위되었던 국왕을 복위시키려는 그의 使命과 관련된 정치적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되었든 고려국왕에 대한 ‘거만함’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그가 다루가치로 부임한 후 행한 조치로는 일반인의 무기소지를 금한 사례만이 확인된다.¹⁶⁾ 요컨대, 위 일화들을 통해서 黑的의 성품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여기에서 ‘교활하고 거짓이 많아 믿기 어려운’ 黑的의 모습을 읽어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그가 다루가치가 된 이후 매우 거만해졌고, 이에 왕이 수차례 제어하여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했다는 기록은 어떤 상황을 근거로 한 평가였을까? 관련하여, 黑的이 귀국한 후인 충렬왕 원년(1275) 10월에 세조 쿠빌라이가 보낸 詔書의 내용이 주목된다.

“그대 나라의 여러 王氏들은 同姓끼리 결혼을 하니 이것은 무슨 이치인가? 이미 우리와 一家가 되었으니 마땅히 우리와 통혼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한 집안이 된 義라고 하겠는가? 또 우리 太祖 황제가 13국을 정벌하자 그 왕들이 다투어서 미녀와 良馬, 진귀한 보물들을 바친 것은 그대도 들은 바이다. 왕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을 때는 太子라고 칭하지 않고 世子라고 칭하고, 국왕의 명령은 예전에는 聖旨라고 하였으나 이제는 宣旨라고 할 것이다. 관직 명칭이 우리 朝廷과 같은 것도 또한 이런 것이다. 또한 듣건대 왕과 공주가 하루에 쌀 2升을 먹고 하는데, 이는 재상들이 많아서 그들 마음대로 하였기 때문이다. 무릇 이 모든 것은 그대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요, 구태여 그대에게 子女를 바치고, 官名을 고치고, 재상의 수를 줄이라는 것은 아니다. 黑的이 와서 말한 그대 나라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모두 들어주지 않았으니, 그대는 그런 줄 알라.”¹⁷⁾

15) 『高麗史』 권26, 원종 10년 11월 癸亥.

16) 『高麗史』 권28, 충렬왕 원년 5월 壬辰.

17) 『高麗史』 권28, 충렬왕 원년 10월 庚戌.

이 詔書는 고려왕실의 동성혼에 대해 몽골 측에서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되어 온 것인데, 여기에서 세조 쿠빌라이는 이외에도 고려의 관직 명칭이 원의 그것과 같은 것, 많은 재상 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문제제기한 내용들이 모두 黑的의 보고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앞서 쿠틀룩케르미쉬 공주의 우려대로 黑的은 ‘참소하여 일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데, 위에 언급된 내용들은 실제 고려-몽골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 혹은 당시 고려의 정치가 안고 있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딱히 黑的이 거짓으로 꾸며낸 ‘참소’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때, 그 구체적인 상황들이 사료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黑的이 다루가치로 부임하고 7개월 남짓의 기간을 지낸 후 곧 귀국하고자 했던 것도, 충렬왕과 공주가 그러한 黑的을 만류하고 나아가 그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식투르를 파견했던 것도, 그리고 黑的이 다루가치로 재임하던 시기 ‘거만’하게 행동하여 충렬왕이 그를 제지했다는 것도 모두 이 보고의 내용, 그리고 조서에는 실리지 않았으나 쿠빌라이에게 보고한 더 많은 내용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즉, 黑的은 고려에 다루가치로 재임하던 기간 중에 이미 감독관인 다루가치라는 그의 직임에 근거하여 위 내용들과 관련해서 고려 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충렬왕이 억제하여” 그러한 문제제기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러한 내용들을 황제에게 직접 보고하기 위해 귀국을 결정했던 것이다. 충렬왕과 黑的 간의 이러한 일련의 갈등 과정은 『고려사』 찬자로 하여금, 黑的의 성품을 위와 같이 평가하고 다루가치 부임 이후의 행적을 ‘거만하다고’ 기록하게 하는 한 가지 배경이 되었을 것인데, 이 과정에서 공주의 대응이 주목된다.

다루가치는 정복지의 정치와 경제, 군사 전반에 대한 감독관이었다. 이들은 몽골제국의 성립단계와 안정단계를 거치면서 점차 管民官으로 그 성격이 변화했다.¹⁸⁾ 원종대 후반 고려에 파견되었던 다루가치는 총체적인

18) 元代 다루가치가 管民官으로 그 성격이 변화해가는 배경과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감독관으로서 경우에 따라 고려의 民政 관련 사안에 간여하기는 했으나, 몽골에서의 그것과 같은 管民官의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¹⁹⁾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들은 몽골의 입장에서 屬國으로 인식되었던 고려에서 황제-몽골조정을 대리하여 그를 감독하는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봤듯이 黑的이 고려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시정을 충렬왕에게 요구하고 나아가 세조 쿠빌라이에게 보고한 것은 ‘감독관’으로서 스스로의 역할에 충실한 결과였다. 따라서 몽골공주, 즉 제국대장공주가 몽골을 대리·대표하여 고려를 감독하는 존재였다고 한다면, 그가 먼저 고려의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지적하거나, 혹은 그를 지적한 黑的의 행위에 호응했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제국대장공주는 그가 ‘참소하여 사단을 꾸며낼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사숙인을 보내어 그를 감시하게 했다.

양상은 다르지만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사례는 黑的 이후에도 보인다. 충렬왕 4년(1278), 嘉林縣 사람이 다루가치에게, 촌락의 대부분이 元成殿과 貞和院 將軍房, 忽赤, 巡軍에 나누어 속하게 되고 그나마 남아있던 金所 한 곳도 鷹坊에 속하게 되어 부역을 바치기가 어려운 사정임을 호소했다. 이때의 다루가치는 충렬왕 원년 12월에 副다루가치로 부임한 후 고려 주재 다루가치가 완전히 철수하게 되는 충렬왕 4년까지 활동했던 石扶天 衢였을 것으로 생각된다.²⁰⁾ 어쨌든, 이러한 요청을 들은 다루가치는 다른

글을 참조할 수 있다. 愛宕松男, 『元代都市制度とその起源』, 『愛宕松男東洋史論集』 v.4-元朝史, 東京: 三一書房, 1988, 313-314;319; Endicott-West, E. “Imperial Governance in Yuan Times,”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46, no.2. 1986; 趙阮, 『元 前期 達魯花赤의 제도화와 그 위상의 변화』, 『동아시아문화연구』 51, 2012; 趙阮, 『大元제국 다루가치체제와 지방통치—다루가치의 掌印權과 職任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25, 2013 외.

19) 고려에 설치되었던 다루가치들에 대한 傳論으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池內宏, 『高麗に駐在した元の達魯花赤について』, 『滿鮮史研究』 中世, 吉川弘文館, 1979; 주채혁, 『高麗内地의 達魯花赤 設置에 관한 小考』, 『清大史林』 1, 1979; 김보광, 『고려-몽골 관계의 전개와 다루가치의 置廢過程』, 『역사와 담론』 76, 2015; 고명수, 『고려 주재 다루가치의 置廢경위와 존재양태』, 『지역과 역사』 제39호, 2016 외 참조.

20) 石扶天衢는 거란인으로, 충렬왕 원년 12월에 副다루가치로 부임하여, 충렬왕 4년

지역도 마찬가지로 상황일 것이니 각 道를 순행하며 조사하여 폐단을 없애겠다고 하고 왕에게 함께 갈 관원을 청했고, 摠郎 金暉이 推考使로 임명되었다. 실제 순행이 이루어졌는지, 순행의 결과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²¹⁾ 어찌되었든, 당시 다루가치가 민의 호소를 들어 고려왕실의 민호 점유 상황을 조사하고자 했다는 것인데, 몽골의 관리였던 다루가치가 황제의 딸인 제국대장공주의 원성전과도 관련된 문제를 ‘폐단’으로 인식하고 바로잡고자 했다는 점이 유의된다.

다루가치는 몽골황제의 관료였고 공주는 황실 구성원이었기에, 이 양자의 관계에서 공주가 우위에 있음은 당연했다. 이러한 점은 연회 등에서의 좌석배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려의 경우 충렬왕 4년 이후로 다루가치가 두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루가치와 공주가 함께 자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충렬왕이 몽골 황제가 보낸 책봉 조서를 받고 난 뒤 사신들에게 베푼 연회에서의 상황이 관련하여 주목된다. 당시 사신은 충렬왕이 ‘부마’라 하여 南面하게 하고 자신은 東向, 다루가치는 西向으로 앉게 했다고 한다.²²⁾ 일단 자리배치에서 부마가 상위에 있었음을 알

(1278)에 귀국했다. 당시 김방경 무고사건을 계기로 충렬왕이 入朝했을 때, 세조 쿠빌라이는 다른 여러 조치들과 더불어 고려의 다루가치를 귀환시키도록 했는데, 이 조치에 따른 귀국이였다. 당시 石扶天衢는 귀국에 앞서 충렬왕에게 解由를 요청하면서 칭찬하는 말을 덧붙여주기를 원했으나, 충렬왕은 그가 별로 잘한 일이 없어 칭찬하는 말은 덧붙이지 않았다고 한다(『高麗史』 권28, 충렬왕 4년 9월 己丑). 한편, 최근의 한 연구는 이때 몽골 측에서 고려의 다루가치를 폐지한 것과 관련하여, 이것이 이른바 ‘親朝外交’의 성과라기보다는 부마의 分地에 조정에서 파견하는 다루가치를 두지 않는 몽골의 관례에 따른 조치였음을 논한 바 있다(고명수, 『고려 주재 다루가치의 置廢경위와 존재양태』).

21) 다만 당시 고려의 재주들이 실제 순행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황제에게 보고될 경우의 파장을 우려하여 관가에서 몰수한 백성을 돌려보내어 원래의 부역을 감당하게 할 것을 청했으나 공주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기록만이 확인된다(『高麗史節要』 권20, 충렬왕 4년 夏4월, 『高麗史』 권89, 齊國大長公主傳, 충렬왕 4년).

22) 충렬왕은 즉위년(1274) 8월에 책봉 조서를 받았는데, 이때의 다루가치는 李益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李益은 원종 13년(1272) 4월에 부임하여 충렬왕 즉위년(1274) 12월에 귀국했다. 당시 다루가치 이익 외에도 원종 14년(1273) 12월에 부

수 있다. 이후 몽골 측 사신이나 그 외 몽골의 宗王, 군수뇌부 등이 고려에서 함께 한 연회의 자리에서는 항상 공주가 국왕과 함께 혹은 국왕보다 상석에 자리했는데, 이는 세조 쿠빌라이의 딸이었던 제국대장공주만이 아니라 몽골 宗王의 딸이었던 다른 공주들도 마찬가지였다.²³⁾ 이를 통해 보건대 다루가치와의 관계에서도 공주가 함께 했다면 그가 국왕과 함께 혹은 그보다 상좌에 앉았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의례적인 부분이 아닌 정치적인 역할 혹은 업무의 차원에서 양자의 관계는 단순한 ‘상하관계’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띤다. 이는 양자가 몽골의 국가체제에서 점하는 정치적 입지वाद도 관련되어 있다.

먼저, 다루가치가 몽골 조정을 대리하여 정복지의 정치·경제·군사 등 주요 사안을 감독하는 존재임은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다. 한편, 몽골에서 공주는 황실 구성원으로서 后妃·諸王·駙馬와 함께 分封의 대상이 되는 신분세력이었다. 전통적인 家産 관념에 따른 分封을 근간으로 한 몽골제국의 국가체제에서 후비·제왕·공주·부마 등은 그들을 ‘대표하는’ 대칸과 함께 제국을 다스리는 권리·권력주체들이었다.

이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諸王·駙馬 등은 스스로의 分領에서 권리와 권력을 행사하기도 했지만, 몽골제국의 정치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그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 몽골 宗正府와 中書省 斷事官의 구성이다. 斷事官은 詞訟을 의미하는 ‘자르구(jargu)’와 종사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 ‘치(chi)’로 구성된 몽골어 자르구치[札魯忽赤]의 한자식 명칭이다. 이들은 몽골제국 초기 행정과 재정 및 군사에 이르는 광범위한 역할을 담당했는데, 자르구치들의 기구로서 설치되었던 것이 몽골의 宗正府, 혹은 太宗正府이다. 시기에 따라 변화를 보이기는 하지만, 宗正府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핵심적인 업무는 諸王과 駙馬 投下의 몽골인, 색목인 등이 저

인한 副다루가치 周世昌도 있기는 했다(『高麗史』 권27, 원종 13년 4월 癸卯, 원종 14년 12월 丙子).

23) 『高麗史』 권89, 齊國大長公主傳, 충렬왕 17년; 권37, 충목왕 즉위년 5월 甲午; 권106, 李承休傳 附 李衍宗傳; 권131, 奇轍傳 등.

지르는 모든 범죄의 처리였다.²⁴⁾ 한편, 자르구치들은 쿠빌라이 집권 이후 斷事官으로 그 명칭이 변화하게 되고 宗正府 이외에 中書省 등 여러 기관에 두어지게 된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이러한 대종정부의 長을 諸王이 담당했고, 그 구성원인 자르구치들은 황제가 임명하는 자, 케식 인원, 그리고 諸王들이 보낸 그 심복으로 구성했다는 점, 그리고 국정의 중심기관인 中書省의 斷事官 역시 諸王 位下로부터 파견된 자들로 구성했다는 점이다.²⁵⁾ 이러한 중정부 자르구치 및 중서성 단사관의 구성은 각 기관에서 다스리는 사안들을 처리하는 데에 諸王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되며, 이는 몽골제국의 분권적 국가구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물론 중앙집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양상은 변모하게 되지만 몽골제국 국가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공주의 경우, 물론 스스로 분봉을 받고 投下官인 케식을 보유하고 投下 다루가치를 두었으며²⁶⁾ 印章을 받아 문서행정도 했지만,²⁷⁾ 그의

24) 『元史』 권 87, 百官志 3, 大宗正府.

25) 『元史』 百官志에는 “諸王으로서 國封을 가진 자”를 자르구치로 삼았다고 되어 있으나(『元史』 권 87, 百官志 3, 大宗正府), 國封을 가진 諸王들은 변방을 鎮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중앙에서 실무적인 詞訟을 직접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諸王 位下로부터 파견되었던 중서성 단사관들과 똑같은 봉록을 받고 있었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대종정부의 자르구치들은 諸王 자신이 아니라, 그들이 파견한 심복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은정, 『元朝成立期 자르구치(斷事官)의 役割變化와 그 性格』,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2, 39~40쪽 및 각주 38 참조.

26) 공주들이 스스로의 케식을 보유하였음은 고려 충선왕비인 薊國大長公主의 사례를 통해 그 실례를 확인할 수 있다(『元史』 卷208, 高麗傳, 成宗 大德 3年 正月). 공주들이 그 分地에 다루가치를 두었음은 諸王과 공주의 分地에 설치한 다루가치들에 임기를 두지 않는 것이 민에게 부담이 되니 임기를 두고 각 位下에서 다루가치를 선발하여 교체하도록 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元史』 卷12, 世祖 至元19年 夏4月 壬寅). 몽골의 宗王·駙馬·公主 등의 位下, 즉 投下領에 두어졌던 다루가치는 宗王·駙馬·公主 등이 親信하는 자 가운데에서 선임되어 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중앙조정에서 파견한 다루가치와는 차이가 있다. 고려

分地에 대한 권한은 그 남편인 부마의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도 했다. 이를 몽골황실의 대표적 姻族인 쿵크라트 알치[按陳] 노안가문에 下嫁한 공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세조 쿠빌라이의 딸로서 세조대에 萬戶직을 계승했던 오로친[斡羅陳]에게 下嫁한 낭가친[囊加眞] 공주는²⁸⁾ 남편 오로친과 함께 세조 至元 7년(1270), 쿵크라트가 부여받은 下營地에 城邑을 세워줄 것을 청했고, 이에 따라 應昌府(→應昌路)가 세워졌다. 오로친이 사망한 후 낭가친 공주는 그 동생으로 만호직을 계승한 테무르[帖木兒]와 혼인했다가, 다시 그 死後에 萬戶職을 계승한 테무르의 동생 만자타이[蠻子台]와 혼인했는데, 이후 成宗 元貞 원년(1295)에 만자타이와 공주는 다시 황제에게 응창로 동쪽에 있는 冬營地에 성읍 짓기를 청하여, 全寧府(→全寧路)가 세워졌다.²⁹⁾ 이 응창로와 전녕로는 쿵크라트가 부여받은 分邑의 하나로, “다루가치, 總管으로부터 이하 여러 官屬을 모두 그 陪臣으로 傳任하고 王人이 간여하지 않았다.”고 한다.³⁰⁾

이러한 쿵크라트의 分邑을 구성하는 데에 공주가 역할을 하고 있음과 함께, 이들 分邑에 대해 공주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도 주목된다. 예컨대, 成宗 元貞 원년에 魯國大長公主, 즉 낭가친 공주가 應昌에 佛寺를 세운 사례, 仁宗 延祐 6년(1319)에 皇姊大長公主 祥哥剌吉이 佛事를 열고 全寧府의 중죄수 27人을 풀어주었고, 전녕부 守臣이 공주에게 아부하여 불법을 행한 사례 등이 확인된다.³¹⁾ 이러한 공주의 영향력 행사에 대해

의 경우, 이러한 투하 다루가치는 설치되지 않았다. 몽골의 투하다루가치와 관련해서는 李治安, 『元代分封制度研究』,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1989 참조.

27) 『元史』 卷26, 仁宗 延祐4年 5月 乙亥.

28) 오로친은 낭가친 공주에 앞서 율계이[完澤] 공주와 혼인했으며, 그 사후에 낭가친 공주와 다시 혼인했다(『元史』 卷118, 特薛禪傳).

29) 이는 全州를 승격한 것이다(『元史』 卷19, 成宗 大德1年 2月 丙申).

30) 『元史』 卷118, 特薛禪傳. 이 두 路는 일시 역시 쿵크라트 출신이었던 魯王 馬某沙王 傳府에 속하게 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元史』 卷43, 順帝 至正14年 夏4月 癸巳朔).

朝廷에서는 前者의 경우는 鈔 1000錠과 金 50兩을 주어 지원했고, 後者에 대해서는 불법을 행한 신료를 조사하고 석방했던 죄수들을 다시 수감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³²⁾ 성종대와 인종대라는 시기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 있지만, 일종의 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후자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요컨대, 몽골의 공주는 황제권 혹은 조정의 입장을 ‘대리’하는 존재라기 보다는 황실의 일원으로서 家産으로서의 제국에 대해 함께 권리를 갖는 정치주체였고, 그의 권리 혹은 권력은 상당부분 그 남편인 駙馬의 그것과 직결되어 있었다. 몽골공주들의 그 分額에 대한 권리, 권력 행사는 물론 황실 출신이라는 점에서 가능했던 것이며 황제-대칸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었지만, 이는 동시에 황제 개인의 ‘恩赦’ 차원이 아니라 몽골 국가체제의 근간이 되는 전통적 관념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에 스스로의 권리를 확보하고 강화하려는 이들의 방향성은 경우에 따라 황제권 혹은 중앙 조정의 권리 확대라는 또다른 방향성과 부딪히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제국대장공주가 고려왕실에 下嫁해 온 초기에 다루가치와의 관계에서 보였던 상황들은 황제권을 대리하여 ‘속국’ 고려의 정치 및 몽골과의 관계 전반을 감독·관리하려 했던 다루가치의 입장과 스스로의 권리와도 직결된 남편 충렬왕의 정치권역의 이해가 중앙조정 이해관계에 따라 어그러지는 것에 대해 방어적이었던 공주의 입장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한 것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³³⁾

31) 여기에 보이는 인종대의 皇姊大長公主 祥哥剌吉은 세조 쿠빌라이의 아들 친킴의 둘째 아들인 順宗 다르마발라의 딸로, 당시 황제인 仁宗 아우르바르와다의 누이였다. 성종 大德 11년(1307)에 魯王 瑯兒不剌과 혼인하였는데, 武宗 至大 3년(1310)에 瑯兒不剌이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았으며, 그 아들 阿里嘉室利가 萬戶를 세습했고, 딸은 이후 文宗이 되는 懷王과 혼인했다(『元史』 卷118, 特薛禪傳, 卷29, 泰定帝 泰定1年 10月 壬午).

32) 『元史』 卷18, 成宗 元貞1年 5月 戊寅; 卷26, 仁宗 延祐6年 7月 甲戌.

33) 물론 고려국왕의 ‘정치권역’인 고려를, 혹은 고려 내에서 몽골공주가 특별한 권익을 갖고 있었던 湯沐邑 등을 몽골공주의 입장에서 몽골황실의 ‘家産으로서’ 부여

Ⅲ. 공주와의 통혼과 고려국왕의 정치력 : 私屬人들의 역할

앞 장에서 살펴본 몽골공주들의 정치적 위치는 몽골제국의 분권적 국가 체제 아래에서 ‘공주’라는 신분이 점한 보편적·제도적 위상과 관련되어 있어 개별 공주에 따른 변화나 차이는 크지 않다. 그러나 개별 공주들이 고려에서 보여준 정치력은 그 편차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개별 공주들의 정치력 간 차이에 그치지 않고 그와 통혼한 고려국왕들의 정치력에서 공주와의 통혼이 작용한 양상 혹은 비중의 차이로 이어진다. 이러한 차이는 아마도 개별 공주들의 가문배경 편차와 관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래에서는 공주의 가문배경이 그와 통혼한 고려국왕의 정치력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 양상의 일단을 공주 私屬人들의 활동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몽골공주들은 고려에 下嫁해 오면서 媵臣을 데리고 왔다. 印侯, 張舜龍, 車信 등이 대표적 사례로, 이들은 모두 齊國大長公主의 怯斡口[ger-ün kö'ü], 즉 私屬人이다. 이들은 ‘私屬人’이라는 호칭에서도 드러나듯, 공주에게 밀착되어 있는 자들이었으며,³⁴⁾ 이들의 고려-몽골 관계에서의 역할은 몽골공주의 그것과도 직결되어 있었다. 이들이 각기 공주의 媵臣이 되기까지의 배경에는 개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모두 확인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제국대장공주의 사숙인 가운데 한 명인 回回人 張舜龍이 공주의 父 世祖 쿠빌라이의 비척치, 즉 케식인 張卿의 아들이었다는 점, 고려 출

받은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고려를 ‘부마고려국왕’의 分領으로 볼 수도 없다. 다만, 여기에서는 고려-몽골 관계에서 몽골공주들이 반드시 몽골조정과 일체화된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를 갖는 존재는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그러한 ‘몽골공주’의 입지가 몽골제국의 국가체제 속에서 ‘공주’라고 하는 존재가 갖는 정치적 위치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34) 제국대장공주의 사숙인, 즉 怯斡口에 대한 최근의 연구성과로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고명수, 『충렬왕대 怯斡口(怯斡口) 출신 관원』 『사학연구』 118, 2016.

신의 또다른 사속인 차쿠다이[車忽觥, 車信으로 개명]는 그 모친이 공주의 유모였다는 점³⁵⁾ 등을 보면, 이들 몽골공주의 사속인들은 공주의 집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자들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일견 당연한 사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고려-몽골 관계에서 공주 사속인들의 위치, 다시 말해 몽골공주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들이 단지 몽골이라는 국가 출신이라는 점 뿐 아니라, 그에 더하여 그 안의 특정 ‘宗王家門’과 관련된다는 점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고려-몽골 관계의 혹은 고려 정치사의 여러 국면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드러난 사례는 거의 제국대장공주의 怯斡口에 한정되지만, 제국대장공주의 怯斡口들 외에도, 고려에 下嫁해 온 공주들을 수행했던 怯斡口, 혹은 私屬人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자들의 존재가 확인된다. 많지는 않지만, 사료에서 확인되는 사례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표> 몽골공주 출신 고려왕비의 私屬人(추정 포함)

공주	수행인	비고
제국대장공주	印侯忽刺歹(쿠라다이)]	몽골인
	張舜龍[三哥(생계)]	회회인, 부친 張卿이 쿠빌라이의 비척치
	車信[車忽觥(차쿠다이)]	고려인, 모친이 공주의 유모
	盧英[式篤兒(식투르)]	河西國인
	鄭公[五十八]	
계국대장공주	闊闊不花(코코부카)	
	闊闊歹(코코다이)	
	章吉徹里[徹里(테리)]	
북국장공주	胡刺赤(쿠라치)	공주의 宮女
	韓萬福	饗人
노국대장공주	八思不花(바스부카)	公主殿 饗人

35) 『高麗史』 권123, 張舜龍傳, 張舜龍傳 附 車信傳.

고려에 下嫁해 온 몽골공주들은 대부분 고려에 온 후에도 몽골에서의 생활방식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들이 고려의 언어를 배워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으며, 주거 역시 穹廬에서 생활했음이 확인되고,³⁶⁾ 위 표에서 보듯 몽골식 이름을 가진 甕人이 확인되는 것을 통해 식생활 또한 기본적으로는 몽골식이었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주를 따라온 사속인 등은 공주가 타지에서의 생활환경에 적응해가는 데에 필요한 여러 역할들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역할은 齊國大長公主로부터 魯國大長公主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되었을 것이다. 한편, 공주의 사속인들은 공주의 일상생활에 대한 보좌역 외에 정치적 사안에 대한 보좌역을 담당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역할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이 시기 공주와의 통혼이 고려-몽골 관계에, 나아가 고려의 정치에 미친 영향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

먼저, 제국대장공주의 사속인들은 다른 공주들의 사속인들과 달리, 고려에서 관직을 역임하면서 고려-몽골 관계 뿐 아니라 고려 정치의 주요 국면에서도 역할을 했다. 이들이 고려식 성명을 부여받은 것은 충렬왕 3년(1277) 정월의 일인데,³⁷⁾ 이에 앞서 쿠라다이[忽刺歹]와 쟁계[三哥], 차쿠타이[車忽鱗] 3인은 中郎將으로 임명되었으며³⁸⁾ 충렬왕 3년에는 모두 장군으로 임명되었다. 노영과 정공은 중랑장을 제배한 후 내시에 속하게 했다고 한다. 이들은 이후에 거듭 승진했고, 印侯[쿠라다이] 등은 재추의 반열에까지 오르게 된다.

충렬왕이 공주가 親信하는 이들에게 관직을 주었던 것은 물론 제국대장

36) 대개 공주들은 고려세자 혹은 국왕과 몽골에서 혼례를 올린 후 고려로 들어오게 되는데, 齊國大長公主와 薊國大長公主의 경우, 그들이 고려에 들어오기 전에 몽골 측에서 보낸 호송 인원이나 고려국왕이 보낸 인원이 먼저 고려에 들어와서 공주를 위한 穹廬를 설치했다는 기사가 확인된다(『高麗史』 권89, 齊國大長公主傳, 원종 15년; 권31, 충렬왕 23년 윤12월 乙丑).

37) 『高麗史節要』 권19, 충렬왕 3년 정월.

38) 『高麗史』 권123, 印侯傳; 張舜龍傳; 張舜龍傳 附 車信傳.

공주가 황제의 딸이라는 사실을 배려해서, 혹은 이에 위압되어서일 수도 있으나, 보다 결정적으로는 그 실효성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충렬왕과 제국대장공주의 통혼은 고려의 입장에서는, 임연의 원종 폐위사건을 통해 드러난 무신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당시 고려세자 충렬왕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성사된 것이었다. 통혼 직후 왕위에 오른 충렬왕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안으로는 무신정권 종식 이후 국왕권을 재구축하는 문제였으며, 밖으로는 통혼과 함께 고려 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담당하게 된 일본 원정 문제와 관련해 발생한 몽골군 원수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충렬왕은 스스로의 부마 위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³⁹⁾ 이러한 가운데, 몽골어에 능숙했을 뿐 아니라 공주의 집안, 이 경우 세조 쿠빌라이의 집안과 연결되어 있었던 공주 사속인들은 몽골 조정과의 여러 교섭을 앞두고 있던 충렬왕의 입장에서 매우 높은 활용도를 가진 자들이었다. 이에 국왕은 그 스스로 이들을 몽골조정과의 교섭에 활용하기 위해 부인인 공주의 ‘사속인’이라는 간접적 관계 외에 스스로와의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며, 그것이 충렬왕이 이들에게 관직을 주었던 한 가지 이유가 아

39) 이정란, 『忠烈王妃 齊國大長公主의 冊封과 그 의미』, 2012; 김보광, 『고려 충렬왕의 케시크(怯薛, kesig) 제도 도입과 그 의도』, 『사학연구』 107, 2012; 이명미, 『몽골 복속기 권력구조의 성립 : 충렬왕대 전반기 국왕 위상의 변화』, 『13~14세기 고려·몽골 관계 연구-정동행성승상 부마 고려국왕, 그 복합적 위상에 대한 탐구』, 혜안, 2016 외 참조. 충렬왕도 그러하지만, 충선왕이 즉위한 후 이른바 ‘조비무고 사건’을 통해 공주와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薊國大長公主와 함께 사원에 행차하거나 계를 받고 행사에 참석하는 등 공식 일정들을 꾸준히 함께 소화했던 것은 이를 통해 공주가 고려에 下嫁해 왔음을 내외에 알리는 목적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몽골 복속기의 정치적 상황에서 몽골공주와의 통혼은 고려국왕권에 기반이 되는 측면과 제한을 가하는 측면을 모두 갖고 있었다. 특히 후자의 측면은 통혼으로 대표되는 황제·황실과의 관계가 다원적으로 형성되는 가운데, 그러한 관계를 통해 권력이 부여되는 몽골 복속기의 권력구조와 관련된다. 본 발표문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는 않을 것이지만,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이명미, 2016, 같은 책.

니었나 한다. 그리고 실제 이들은 특히 對몽골 사행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하면서 이러한 충렬왕의 기대에 부응했다.⁴⁰⁾

이처럼 제국대장공주의 사속인들은 단지 공주의 사속인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고려의 관직을 띠고 고려국왕의 명령을 받아 여러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관련 연구에서 이 시기 국왕의 측근세력으로 분류되기도 했다.⁴¹⁾ 그러나 공주의 사속인이 곧 자연스럽게 국왕의 측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충렬왕-제국대장공주 이후의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세력으로서의 공주 사속인들은 기본적으로는 공주세력으로 별도로 분류하는 편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⁴²⁾ 다만, 이 시기 공주 사속인들이 뒷 시기의 공주 사속인들과 달리 고려의 관직을 받아 고려의 정치세력화하여 사실상 충렬왕의 측근으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사실과 그 배경에는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공주 사속인의 역할 및 국왕과의 관계는 충선왕대 이후 변화를 보인다. 成宗 테무르의 형 晉王 감말라의 딸이었던 薊國大長公主가 충선왕과 통혼하고 고려에 오면서 데리고 온 사속인들로 추정되는 자들은 충선왕 즉위년(1298)에 발생한 이른바 ‘趙妃무고사건’의 과정에서 그 활동상이 확인된다. 충선왕이 즉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공주는 충선왕의 부인 중 한 명인 趙妃가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을 질투하여, 코코부카[闊闊不花]와 코코다이[闊闊歹]를 원 황태후에게 보내어 조비가 왕의 총애를 독점하고 있음을 전하게 했다. 이에 충선왕은 박경량을 보내어 편지의

40) 특히 많은 활동을 보였던 印侯는 “성격이 광쾌하고 몹시 탐욕스러웠으나 명을 전 달하는 데 능했기 때문에, 충렬왕이 공주와 함께 入朝할 때 마다 인후가 따라가지 않은 일이 없고, <황제에게> 아뢰 일이 있으면 반드시 印侯를 보냈다.”는 평을 듣기도 했다. 또한 김방경에 대한 무고 사건을 해명하는 과정이나 평양을 다시 찾는 데에도 印侯의 공이 있었다고 한다(『高麗史』 권123, 印侯傳).

41) 김광철, 『충렬왕대 측근세력의 분화와 그 정치적 귀결』, 『고고역사학지』 9, 1993; 이익주, 『高麗·元 관계의 構造와 高麗後期 政治體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42) 고명수, 『충렬왕대 怯隣口(怯伶口) 출신 관원』.

내용을 묻게 했지만, 그는 오히려 코코부카 등에게 맞고 돌아왔다. 충렬왕 또한 공주를 달래는 한편으로 앞서 자신의 측근 도성기, 김수 등으로부터 적몰한 家産과 가족, 노비 등을 코코부카와 코코다이 및 테리[徹里, 章吉徹里] 등에게 하사하여 공주의 마음을 돌리려 했으나, 결국 공주는 코코다이 등을 몽골에 보냈다. 이후에 다시 趙妃의 어머니인 趙仁規의 처가 왕과 공주의 사이를 이간하하기 위해 저주를 했다는 내용의 익명서가 궁문에 붙었고, 공주는 다시 章吉徹里를 보내어 이 익명서의 내용을 몽골에 전하게 했다.⁴³⁾ 이들은 각기 공주의 祖母이며 삼촌이었던 몽골 태후 및 成宗 테무르의 사신들과 함께 돌아와서 관련자를 門事했고, 충선왕과 공주의 入朝를 명하는 황제의 詔書를 전달했는데, 이는 결국 충선왕 폐위와 충렬왕 복위로 이어졌다.

여기에 보이는 코코부카, 코코다이, 테리 등에 대해서는 그 출신 등과 관련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려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계국대장공주가 충선왕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한 후 충선왕과 충렬왕이 만류하는 상황에서도 이 사안을 몽골에 전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인물들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은 공주를 수행해 온 사속인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 가운데, 코코부카는 충렬왕이 복위하고 공주와 충선왕이 모두 몽골로 소환된 이후, 충렬왕 25년(1299) 한희유 무고사건과 관련하여 한희유 등을 압송하기 위한 사신으로 한 차례, 그 이듬해 황후 책봉 조서를 전하기 위한 사신으로 한 차례 고려에 왔다.⁴⁴⁾ 그리고 충숙왕 2년(1315), 충숙왕 즉위 후 고려에 와 있던 공주가 몽골로 돌아가자, 仁宗 아유르바르와다가 院使 코코다이[闊闊歹] 등을 보내어 맞이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⁴⁵⁾ 여기에 보이는 코코다이는 앞서 공주를 따라 고려에 왔던 코코다이인 것으로 보인다. 즉, 코코부카, 코코다이, 테리 등은 공주가 충

43) 『高麗史』 권89, 薊國大長公主傳.

44) 『高麗史』 권31, 충렬왕 25년 4월 己未, 26년 정월 辛卯.

45) 『高麗史』 권89, 薊國大長公主傳, 충숙왕 2년.

선왕과 함께 몽골로 돌아갈 때 그를 따라 몽골로 돌아갔고, 이후에도 공주와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계국대장공주의 사속인들과 같이 구체적인 기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활동상을 통해 薊國大長公主의 사속인들 역시 공주의 집안-晉王 감말라 집안과 관련을 가진 자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지점이다. 또한 이들이 조정의 사신 등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했던 점에서 몽골조정과도 연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晉王 감말라가 成宗 테무르의 형이었다는 점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들은 앞선 충렬왕대 齊國大長公主의 사속인들과 달리, 고려에서 어떤 관직을 받거나 하여 국왕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갖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선 충선왕이 1298년 즉위시 재위기간이 워낙 짧기도 했거니와 즉위 직후 충선왕과 薊國大長公主 간 갈등이 시작되어 곧이어 충선왕이 폐위되었다는 점, 그리고 충선왕이 복위한 후에도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기간을 몽골에 체재했고 그 스스로 당대 황제인 武宗 카이산 및 仁宗 아우르바르와다와 밀착되어 있어 굳이 이들을 몽골조정과의 교섭 과정에 활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결과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가운데 계국대장공주의 사속인들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공주의 사속인으로서만 그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로부터는 몇몇 궁녀나 虜人의 존재만이 확인될 뿐 공주의 사속인 자체가 그다지 확인되지 않기도 하거니와, 충렬·충선왕대와 같은 정치적 국면에서의 사속인의 활동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후 시기에 사속인들의 활동을 기대할 만한 상황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기록상의 문제 이상의 변화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관련해서 충숙왕비 慶華公主의 사례와 충혜왕비 德寧公主의 사례가 주목된다.

먼저, 慶華公主는 충숙왕이 濮國長公主와 曹國長公主에 이어 세 번째로 맞이한 몽골공주로, 魏王 아모가의 딸이며 曹國長公主와는 자매간이다. 충숙왕이 사망한 후 충혜왕이 경화공주를 간음한 사건이 발생했고, 공주는

몽골로 돌아가려 했으나 충혜왕이 방해하여 무산되었다. 이에 공주는 曹頤를 불러 상황을 알렸고, 조적은 정동행성관 洪彬 등과 함께 충혜왕을 공격했다. 이른바 ‘조적의 난’이다. 이 과정에서 조적은 사망했으며, 충혜왕은 몽골로 압송되어 심문을 당했다.⁴⁶⁾ 조적은 고려의 재상이자 瀋王 세력이기도 했던 인물인데, 이 일련의 과정에서 경화공주가 충혜왕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를 외부로 알려 사태를 수습 혹은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의 사속인이 아닌 고려관료인 조적을 통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충혜왕비 德寧公主의 사례도 유사한 맥락에서 주목된다. 鎭西武靖王 최 췌[焦八]의 딸인 덕녕공주는 충혜왕과의 사이에서 충목왕을 낳았고, 충혜왕이 유배 도중 사망하여 충목왕이 즉위한 후 태후로서 섭정을 했던 인물이다. 이 과정에서 배전 등 몇몇 인물이 그를 보좌했는데, 이때 측근에서 그를 보좌한 인물 가운데에는 공주의 사속인으로 보이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 두 사례는 앞서 본 제국대장공주와 계국대장공주의 경우 고려에서 정치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나 분란이 발생하여 몽골에 이를 전해야 할 상황에서 그 사속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위 시점에서 경화공주와 덕녕공주의 사속인들이 고려 내에서 정치적으로 자리잡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앞서 충렬왕이 세조 쿠빌라이의 가문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제국대장공주의 사속인들에게 고려관직을 주면서 이들을 몽골조정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스스로의 정치력을 배가시켰던 것과는 달리, 충숙왕·충혜왕은 공주의 사속인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차이 혹은 변화의 배경을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 다만 여러 정황들을 통해 그 일면을 살펴보자면, 이는 당대 고려국왕들이 처해 있었던 몽골과의 관계 상황에 더하여 공주들의 가문배경, 나아가 그로부터 비롯된 공주 사속인의 정치적 효용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

46) 『高麗史』 권36, 충혜왕 복위년 8월 甲午; 권89, 慶華公主傳; 권131, 曹頤傳.

리고 이것은 당시 몽골의 정국변동 상황과도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충숙왕대에 공주의 사속인들이 고려 내에서 정치적으로 자리잡지 못했던 데에는 우선 충숙왕의 개인적인 성향 및 그가 처해 있었던 정치적 상황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충숙왕은 충선왕에게 양위를 받았으나 충선왕이 사실상 정권을 장악한 가운데 고려정치에서도, 몽골과의 관계에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충선왕 실각 후에는 곧이어 瀋王 즉의 무고로 몽골에 소환되어 억류되었고, 이후 귀국하여서는 정치를 거의 방기하다시피 했다. 충숙왕이 이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치적 무기력 상태에 처하게 된 데에는 그의 성향에 더하여 몽골조정과의 개별적 관계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몽골복속기 고려국왕들은 즉위 전 몽골황실의 케식에 참여했고,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교류나 관계에 그치지 않고 어느 정도 관례화 혹은 제도화되어 총체적인 고려-몽골 관계가 유지되는 데에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었다.⁴⁷⁾ 그러나 케식에의 참여라는 제도적 틀 아래에서 맺어지는 특정 고려국왕과 특정 몽골황제의 ‘개별적 관계’는 상황에 따라서, 혹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관계의 차이가 갖는 정치적 작용의 차이는 해당 국왕이 즉위 후 정치를 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충숙왕이 즉위 전 케식에 참여했던 시기는 武宗~仁宗대에 해당하는 데,⁴⁸⁾ 주지하다시피 무종과 인종은 충선왕과 각별한 관계에 있었고, 그나마 충선왕이 실각하여 親政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는 몽골 내 정권도 교체되어 있었다. 仁宗에 이어 즉위한 英宗은 역시 몽골황실의 부마이자 케식이기도 했던 고려 종실 출신 瀋王 王暉를 총애했다고 하며, 이는 충숙왕에게 불만을 품은 고려의 신료들이 王暉를 고려국왕에 옹립하기 위한

47) 고려 宗室의 케식 참여 양상 및 그 의미와 관련해서는 森平雅彦, 『元朝ケシク制度と高麗王家-高麗・元關係における禿魯花の意義について』, 『史學雜誌』 第110編 第2號, 2001 참조.

48) 李穡 『牧隱集』 文藁 卷17, 海平君 諡忠簡尹公墓誌銘 并序

일련의 정치행위들을 지속했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⁴⁹⁾ 한편, 충숙왕은 1330년 충혜왕에게 선위한 뒤 몽골에 가 있으면서 당시 황제였던 文宗 토크테무르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던 것으로 보이는데,⁵⁰⁾ 복위한 후에는 몽골에서도 다시 정권이 교체되어 順帝 토곤테무르가 즉위한 상황이었다. 順帝는 즉위 전 1년 반 정도 고려에서 유배생활을 했는데,⁵¹⁾ 당시 충숙왕은 충혜왕에게 선위한 뒤 몽골에 가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충숙왕과 順帝 토곤테무르는 단지 서로 가깝지 않았던 것 이상으로, 정치적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順帝 토곤테무르는 明宗 코실라의 長子이다. 명종은 天曆 내란 등으로 몽골 황제위 경쟁이 격화한 가운데 그 동생 文宗 토크테무르와 그를 옹립한 權臣 엘테무르[燕鐵木兒]에 의해 독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가운데, 順帝가 즉위한 후인 1335년(順帝 元統 3), 또다른 權臣 바얀[伯顏]은 엘테무르의 아들인 唐其勢와 그 동생 塔刺海에게 謀逆의 죄를 씌워 주살했고, 엘테무르의 딸인 答納失里[答納失里] 皇后를 出宮시키고 이어 독살했다.⁵²⁾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文宗의 舊臣이었던 충숙왕과, 文宗 및 그를 옹립한 엘테무르에 의해 사망한 明宗의 아들 順帝, 혹은 順帝 재위

49) 심왕옹립운동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문들이 있는데, 주로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北村秀人, 『高麗時代の藩王についての一考察』, 『人文研究』 24-10, 1973; 김택당, 『고려 충숙왕대의 심왕 옹립운동』, 『역사학연구』 12, 1993; 김혜원, 『고려 후기 藩王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이익주, 『14세기 전반 고려·원 관계와 정치세력 동향-충숙왕대의 심왕옹립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9, 2000; 이명미, 『몽골 복속기 권력구조의 인식과 활용 : 충숙왕~충혜왕대 국왕위 관련 논의와 국왕 위상』, 『13~14세기 고려·몽골 관계 연구』, 2016 외 참조.

50) 충숙왕은 1332년에 복위했으나 수개월 더 몽골에 체류하다가 이듬해 윤3월에야 몽골을 출발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당시 몽골에서 정권이 급속히 교체되는 가운데 충숙왕이 文宗의 舊臣이라 곧바로 몽골을 떠나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다(『高麗史』 권35, 충숙왕 복위후 2년 3월).

51) 『高麗史』 권36, 충혜왕 즉위년 7월 丁巳; 원년 12월 甲寅.

52) 『元史』 卷38, 順帝 元統 3年 6月 庚辰; 卷114, 列傳1 后妃1 順帝 答納失里皇后.

초기의 權臣이었던 바얀의 관계가 원만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몽골황제-조정과의 관계는 충숙왕이 재위기간 보여준 정치적 무기력함에 중요한 한 가지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가운데, 그가 통혼한 공주의 가문 역시 위와 같은 상황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충숙왕은 총 3명의 몽골공주와 통혼했다. 먼저 동왕 3년(1316) 營王 에센테무르의 딸 濮國長公主와 통혼했는데, 공주는 통혼 후 얼마되지 않아 사망했다. 營王 에센테무르는 쿠빌라이의 5子 雲南王 후계치[忽刺赤]의 아들로 아버지를 이어 운남왕에 봉해졌으며 武宗 즉위 직후 營王에 봉해졌다.⁵³⁾ 이후 충숙왕은 심왕 측의 무고로 몽골에 억류되어 있다가 동왕 12년(1325) 귀국하기 전 해에 曹國長公主와 다시 통혼했다. 조국장공주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고,⁵⁴⁾ 충숙왕은 다시 경화공주와 통혼했다.⁵⁵⁾ 조국장공주와 경화공주는 자매간이며, 모두 魏王 아모가의 딸이다. 魏王 아모가는 武宗 카이산과 仁宗 아유르바르와다의 庶兄으로, 인종대에 죄를 얻어 고려에 유배되었다가⁵⁶⁾ 泰定帝가 즉위하면서 사면된 인물이다.⁵⁷⁾ 그가 고려에 유배와 있던 기간 고려국왕은 충숙왕이었고, 이러한 인연으로 그는 두 명의 딸을 충숙왕에게 연이어 下嫁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 아들 魏王 孛羅帖木兒의 딸이 공민왕에 下嫁한 魯國大長公主인 것도 이러한 인연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⁵⁸⁾

충숙왕의 장인인 營王 에센테무르와 魏王 아모가는 모두 몽골 宗王이기는 했으나, 중앙의 정치와 관련한 활동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북국장공주의 부친인 영왕 가문의 경우는 그 出鎮 지역이 운남으로, 지리적으

53) 『元史』卷22, 武宗 至大元年 正月.

54) 『高麗史』권89, 曹國長公主傳.

55) 『高麗史』권89, 慶華公主傳.

56) 『高麗史』권34, 충숙왕 4년 윤정월 壬申; 『元史』卷26, 仁宗 延祐 5年 6月 乙巳.

57) 『高麗史』권35, 충숙왕 10년 10월 戊辰; 『元史』卷29, 泰定帝 泰定 元年 正月 己酉.

58) 이명미, 「고려·원 왕실통혼의 정치적 의미」.

로도 중앙조정과는 거리가 있었다. 따라서 앞 시기 공주 사속인들에 비해 충숙왕비가 된 공주들이 데리고 온 사속인들이 몽골 조정과 어떤 연계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 혹은 몽골 조정과의 교섭과정 등에서 특별히 그들이 속해 있었던 종왕 가문을 배경으로 활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적었을 것이다. 또한 이 시점은 몽골과의 관계가 시작된 지 어느정도 시일이 흐르기도 하여, 사속인들의 몽골어 실력과 같은 것은 얼마든지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자질로 특별한 메리트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고려국왕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황제-조정과의 관계가 불편하여 정치적 무기력함을 보인 충숙왕이 중앙조정과는 거리가 있으며 별다른 정치적 무게감이 없는 종왕 가문에서 온 공주의 사속인들에게 정치적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나아가, 공주 스스로도 정치적 분쟁 상황에 휘말렸을 때 자신의 사속인을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혜왕비 德寧公主는 鎭西武靖王 최펠[焦八]의 딸로, 통혼 당시 황제였던 文宗 특 테무르와는 혈연거리가 8촌이 되어 몽골공주 출신 고려왕비 가운데에서는 통혼 당시 황제와의 혈연거리가 가장 멀다. 그러나 근래의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鎭西武靖王 최펠은 정치적으로는 당대 중앙정권과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 그는 權臣 엘테무르가 정권을 장악한 후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우기도 했으며, 그 조카인 西安王 아라트나시리[阿剌忒納失里]는 엘테무르가 天曆의 내란 중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군대를 내어 도운 인물이었다.⁵⁹⁾ 충혜왕이 즉위 전 몽골에서 숙위하면서 엘테무르의 총애를 받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⁶⁰⁾ 이에 충혜왕과 덕녕공주의 통혼은 각각이(덕녕공주의 경우는 그 아버지 최펠이) 엘테무르와 맺은 관계를 매개로 한 것이었다고 할 수

59) 이 시기 몽골의 정권 변동 상황 및 그것이 충혜왕의 즉위와 폐위 등 과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권용철, 『大元帝國 末期 政局과 고려 충혜왕의 즉위, 복위, 폐위』, 『한국사학보』 56, 2014 참조.

60) 『高麗史』 권36, 충혜왕 2년 2월 甲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충혜왕이 짧은 재위 후 폐위되었다가 1339년 충숙왕 사후 복위했을 때 몽골황제는 順帝 토곤테무르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明宗 코실라의 長子인 順帝는 그 아버지의 사망과 관련되어 있던 文宗 및 그를 옹립한 권신 엘테무르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文宗 舊臣이었던 충숙왕과 마찬가지로 엘테무르와 밀착되어 있던 충혜왕 및 덕녕공주의 친정인 鎮西武靖王 가문과 順帝의 관계 역시 원만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아마도 덕녕공주가 그 집안에서 데려왔을 사속인들은 충혜왕대 몽골과의 관계에서 역할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며, 이는 그들이 고려 내에서 정치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없었던 데에 한 가지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가운데 충혜왕 사후 어린 아들 충목왕이 즉위하여 섭정을 하게 된 덕녕공주으로서도 몽골조정과의 관계에서도, 고려 정치에서도 입지를 갖고 있지 못했던 자신의 사속인을 활용하기보다는 남편 충혜왕의 충신을 활용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고려국왕과 몽골공주의 통혼은 그 자체로 총체적인 고려왕실과 몽골황실의 세대를 거듭한 가문 간 관계라는 점에서 고려-몽골 관계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그리고 이러한 몽골황실과의 통혼을 통해서 고려국왕들은 몽골황실의 ‘부마’로서 여러 제도적, 의례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대를 거듭한 통혼이라는 틀 혹은 총체적 관계 아래에서 개별적인 통혼을 통해 맺어지는 가문 간 관계는 고려왕실 대 특정 몽골 宗王 가문의 통혼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몽골 宗王들은 그들이 몽골 황실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황제권과 직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분봉을 통해 구성되는 몽골의 분권적 국가체제에서 권리-권력을 갖는 주체였다. 더욱이 몽골의 정권교체 주기가 빨라지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교체과정에서 정치적 역할을 했던 宗王들의 정치적 입지 및 중앙 조정-황제권과의 관계 역시 함께 변동했다. 그리고 그러한 宗王의 딸과 통혼한 고려국왕들은 몽골조정과의 정치적 관계에서, 국왕 스스로가 형성한 황제와

의 관계 외에도 개별 宗王 가문과 형성된 관계, 그 종왕과 황제권의 관계에 다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몽골제국 내에서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할 문제인데, 우선 여기에서는 개별 宗王 가문과도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공주 사속인들의 활동을 통해 개별 통혼관계가 고려국왕의 몽골조정과의 관계 및 고려정치에 작용하는 양상의 일면을 확인해 보았다.

고려-몽골 관계에서 제국대장공주 스스로의 역할, 그리고 그 사속인들의 역할이 몽골을 대리한 고려에 대한 감시역으로 읽히기도 했던 것은 그 집안이 몽골 宗王으로서의 쿠빌라이 가문이자 황제의 가문이라는, 두 정체성이 혼재된 사례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세조 쿠빌라이라는 황제 개인의 역량, 그리고 이 시기 몽골의 정권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는 점 또한 공주와 그 사속인들의 정치적 활동이 부각될 수 있었던 한 배경이었다. 비록 그 활동 양상이 두드러지지 않지만, 이후 공주들의 사례까지 확장시켜 볼 때, 제국대장공주의 사례에서 혼재되었던 그 집안의 두 가지 정체성은 분리된다. 이를 통해 고려-몽골 고려-몽골 관계 속에서 몽골공주가 점했던 위치를 재정립하는 한편으로 공주와의 통혼이 개별 국왕들의 정치력 혹은 고려-몽골 관계에 미친 영향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하고 이 시기 고려-몽골 관계가 갖는 특징의 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이상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世祖 쿠빌라이의 딸로 고려 충렬왕과 통혼한 쿠틀룩케르미쉬 공주, 즉 齊國大長公主는 現 황제의 딸이라는 점이 작용하기도 하여 그 정치적 활동이 왕성했다. 고려 對 몽골이라는 관계의 구도에서 이러한 제국대장공주의 존재와 활동은 몽골국가를 대표해서 고려국가를 감독하거나 제어하

는 그것으로 읽히기도 한다. 그러나 몽골황제를 대리해서 정복지(복속지)의 정치·군사 등 제반 문제를 감독했던 몽골관료 다루가치들과의 관계에서 제국대장공주는 오히려 스스로의 권익, 그와 직결되어 있는 남편 부마 충렬왕의 정치권역의 이해를 몽골조정과의 이해관계로부터 방어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은 分封을 근간으로 하는 분권적 몽골의 국가체제에서 공주는 황제권 혹은 조정의 입장을 ‘대리’하는 존재라기보다는 황실의 일원으로서 家産으로서의 제국에 대해 함께 권리를 갖는 정치주체였고, 그의 권리-권력은 상당부분 그 남편인 駙馬의 그것과 직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몽골공주들의 그 分領에 대한 권리, 권력 행사는 물론 황실 출신이라는 점에서 가능했던 것이며 황제-대칸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었지만, 이는 동시에 황제 개인의 ‘恩赦’ 차원이 아니라 몽골 국가체제의 근간이 되는 전통적 관념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에 스스로의 권리를 확보하고 강화하려는 이들의 방향성은 경우에 따라 황제권 혹은 중앙 조정의 권리 확대라는 또다른 방향성과 부딪히기도 했던 것이다.

한편, 고려국왕과 몽골공주의 통혼은 그 자체로 총체적인 고려왕실과 몽골황실의 세대를 거듭한 가문 간 관계라는 점에서 고려-몽골 관계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그러나 세대를 거듭한 통혼이라는 틀 혹은 총체적 관계 아래에서 개별적인 통혼을 통해 맺어지는 관계는 고려왕실 對 특정 몽골 宗王 가문의 통혼이었고, 이러한 몽골 宗王들은 앞서 본 공주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몽골황실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황제권과 직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분봉을 통해 구성되는 분권적 몽골의 국가체제에서 권리-권력을 갖는 주체였다. 이에 그러한 宗王의 딸과 통혼한 고려국왕들은 몽골황실의 ‘부마’로서 여러 제도적, 관례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한편으로, 실제 몽골조정과의 정치적 관계에서는 개별 宗王 가문과 형성된 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개별 통혼 관계가 고려국왕의 몽골조정과의 관계 및 고려정치에 작용하는 양상은 개

별 宗王 가문과도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공주 사속인들의 활동을 통해 그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충렬왕이 제국대장공주의 사속인들에게 고려관직을 하사하고 여러 정치적 역할을 부여했던 데에는 그들이 공주의 아버지인 세조 쿠빌라이와도 사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었다는 점이 주효하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몽골 내 정권 교체 주기가 빨라지고 그러한 과정으로부터 고려의 정치, 국왕위 문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충숙왕대 이후 시기에 공주 사속인의 정치적 활동이 드러나지 않는 데에는 다른 요인들과 함께 공주의 집안이 그러한 정권 교체 및 유지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가문이었거나 혹은 역으로 적극적인 역할의 결과로 현정권과 결끄러운 관계에 있는 가문이었다는 점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몽골 관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고려왕실-몽골황실 간 통혼은 세대를 거듭한 통혼이라는 전체적인 면에서는 고려국가와 몽골국가의 총체적 관계를 성립·유지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고려에 下嫁해 온 개별 몽골공주들은 몽골황제권-조정을 대표한다기보다는 스스로가 몽골제국의 분권세력으로서, 또 마찬가지로 위상을 갖는 개별 宗王家 출신으로서 역할을 했다. 공주와의 통혼이 고려국왕권에 미친 영향 역시 그러한 측면에서 더 조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17. 4. 28. 심사시작일: 2017. 6. 4. 게재확정일: 2017. 6. 11.

주제어: 몽골공주의 정치적 위치, 제국대장공주, 겁령구, 사속인, 다루가치, 제국대장공주, 고려-몽골 관계

참고문헌

- 이명미, 『13~14세기 고려·몽골 관계 연구-정동행성승상 부마 고려국왕, 그 복합적 위상에 대한 탐구』, 해안, 2016.
- 정용숙, 『고려시대의 후비』, 민음사, 1992.
- 고명수, 『충렬왕대 怯憐口(怯怜口) 출신 관원』, 『사학연구』 118, 2016.
- 고명수, 『고려 주재 다루가치의 置廢경위와 존재양태』, 『지역과 역사』 제39호, 2016.
- 권순형, 『원 공주 출신의 왕비의 정치권력 연구-충렬왕비 齊國大長公主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77, 2005.
- 권용철, 『大元帝國 末期 政局과 고려 충혜왕의 즉위, 복위, 폐위』, 『한국사학보』 56, 2014.
- 김광철, 『충렬왕대 측근세력의 분화와 그 정치적 귀결』, 『고고역사학지』 9, 1993.
- 김난옥, 『충혜왕비 德寧公主의 정치적 역할과 위상』, 『한국인물사연구』 14, 2010.
- 김당택, 『고려 충숙왕대의 심왕 옹립운동』, 『역사학연구』 12집, 1993.
- 김보광, 『고려 충렬왕의 케시크(怯薛, kesig) 제도 도입과 그 의도』, 『사학연구』 제107, 2012.
- 김보광, 『고려-몽골 관계의 전개와 다루가치의 置廢過程』, 『역사와 담론』 76, 2015.
- 김성준, 『麗代 元公主出身王妃의 政治的位置에 對하여-특히 忠宣王妃를 중심으로-』, 『한국여성문화논총』, 이대출판부, 1958.
- 김현라, 『고려 충렬왕비 齊國大長公主의 위상과 역할』, 『지역과 역사』 23, 2008.
- 김현라, 『원간섭기 충선왕비 薊國大長公主의 위상 정립과 의미』, 『지역과

역사』 39, 2016.

김혜원, 『麗元王室通婚의 성립과 특징』, 『이대사원』 24·25합, 1989.

김혜원, 『고려후기 瀋王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김호동, 『몽골제국사 연구와 ‘集史’』, 『경북사학』 25, 2002.

이명미, 『고려·원 왕실통혼의 정치적 의미』, 『한국사론』 49, 2003.

이명미, 『元宗代 고려 측 對 몽골 정례적·의례적 사행 양상과 그 배경 - 1273년(元宗 14) 고려 측 賀冊封 使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69, 2015.

이명미, 『고려-몽골 간 使臣들의 활동 양상과 그 배경』, 『한국중세사연구』 43, 2015.

이은정, 『元朝成立期 자르구치(斷事官)의 役割變化와 그 性格』,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2.

이익주 『高麗·元 관계의 構造와 高麗後期 政治體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이익주, 『14세기 전반 고려·원 관계와 정치세력 동향-충숙왕대의 심왕옹립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9, 2000.

이정란, 『충렬왕비 齊國大長公主의 책봉과 그 의미』, 『한국인물사연구』 18, 2012.

이정란, 『충렬왕대 薊國大長公主의 改嫁운동』, 『한국인물사연구』 9, 2008.

조원, 『元 前期 達魯花赤의 제도화와 그 위상의 변화』, 『동아시아문화연구』 51, 2012.

조원, 『大元제국 다루가치체제와 지방통치-다루가치의 掌印權과 職任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25, 2013.

주채혁, 『高麗內地의 達魯花赤 設置에 관한 小考』, 『清大史林』 1, 1979.

森平雅彦, 『駙馬高麗國王の成立-元朝における高麗王の地位についての豫備的

考察」, 『東洋學報』 79-4, 1998: 『モンゴル覇權下の高麗 : 帝國秩序と王國の對応』, 名古屋大學出版會, 2013.

北村秀人, 「高麗時代の藩王についての一考察」 『人文研究』 24-10, 1973

愛宕松男, 「元代都市制度とその起源」, 『愛宕松男東洋史論集』 v.4-元朝史, 東京: 三一書房, 1988.

池内宏, 「高麗に駐在した元の達魯花赤について」: 『滿鮮史研究』 中世, 吉川弘文館, 1979.

苗冬, 『元代使臣研究』, 南開大學 博士學位論文, 2010.

李治安, 『元代分封制度研究』, 天津古籍出版社, 1989.

E. Endicott-West, “Imperial Governance in Yuan Times,”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46, no.2. 1986.

<Abstract>

Political Position of Mongol Princesses Married Goryeo Kings and Goryeo-Mongol Relation

Myungmi Lee*

This thesis aimed to study the political position of Mongol princesses who married Goryeo Kings in the context of Mongol Empire's state system in a large format. Under the decentralized state system of the Mongol Empire, the princes existed as decentralization forces like queens, kings (諸王), and royal sons-in law.

Therefore, Mongol princesses who married Goryeo Dynasty kings not only represented the Mongol Empire, the state, but also represented each royal family as kings (諸王)' daughters. Their political capabilities and connections were based on their parents', especially their fathers' background rather than the Mongol emperor's court itself.

Princess Qutluqkelmish (齊國大長公主), the daughter of emperor Qubilai, and her husband king Chungryul (忠烈王) were able to actively utilize her personal infrastructure, specifically the ger-ün kö'üs (怯斡口, 私屬人) not only in the process of exercising their political power, but also in the process of 'negotiating' with the emperor. However, the ger-ün kö'üs of other Mongol princesses from families who had low share in imperial politics or who's fief was located far from the court failed to play such political role in Goryeo.

Princesses also formed decentralization forces along with their

* Seoul National Univ.

husbands. Therefore, Mongol princesses married Goryeo Kings did not necessarily have the same interests with the Mongol court or the emperor in various phases of Goryeo - Mongol relations. The conflict between princess Qutluqelmish and Darugachi (達魯花赤), a supervisor on behalf of the Mongol court, showed that the political position of the Mongol princess was a decentralization force.

In summary, to systematically understand political positions of Mongol princesses in Goryeo-Mongol relation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individual and familial relationship among Goryeo kings, Mongol emperors, Mongol kings, the fathers of princesses.

Key Words: The political position of Mongol princesses, the princess Qutluqelmish(齊國大長公主), ger-ün kö'üs(怯憐口, 私屬人), Darugachi(達魯花赤), Goryeo - Mongol relations